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28.

조인철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 12.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33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 (2026. 3. 3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회부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 3. 31.)

  상정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 4. 2.)

상정

○ 제43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 5. 1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1차 정무위원회 (2026. 5. 1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인철의원)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처벌·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적·다단계적 범죄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총책·기획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 근절과 범죄 수익 추적·환수에도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특히, 핵심 가담자의 검거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 내부자의 제보·협조를 유도할 체계적 형벌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제보와 협조를 유도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 자가 동일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기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곽 현 준)

□ 개정안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관련 죄를 범한 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조인철의원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한정애의원안 제17조의2 신설).

○ 또한 조인철의원안은 관련 기관이 자진신고·협조 관련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항에 따라 형을 감면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감면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면을 제한하려는 것임(조인철의원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 행	조인철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신 설>	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	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

	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또는 제보·협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사건처리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기관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면제 또는 감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감면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화·지능화·국제화로 인하여 기존의 수사방법으로는 범죄의 적발·처벌에 한계가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기 위하여는 조직 내부자의 제보·협조가 필수적임.

○ 이에 조직 내부 가담자의 정보제공을 유도함으로써 대규모 범죄조직을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자에 대하여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범의 죄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는 증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등에 본인의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참고로, 현재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도입된 국내 입법례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등이 존재함.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

○ 대표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카르텔 사건의 적발·억제를 위하여 1996년 개정 시 부당한 공동행위[2] 수사

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행위로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협조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 및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옵티머스 사건[3] 등 대규모 자본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내부자의 협조가 없으면 수사가 까다로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23년 개정을 통해[4] 시세조종(제176조),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제174조) 사기적부정거래(제178조) 업무 정보이용(제173조의2제2항) 범죄의 수사협조자에 대하여는 자신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안들은 이러한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또는 관련 범죄수익은닉죄를 범한 자가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 자신의 범죄에 따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생각됨.

○ 참고로 지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5]에 따르면

---

3)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증권사 등의 사모펀드 가입권유를 통해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 2,000억원을 모아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정부채권에 투자한다고 하여 기망하고,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해 5,500억원의 손실을 본 사건.

4) 법률 제19566호, 2023. 7. 18. 개정, 2024. 1. 19. 시행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형벌 감경 외에 면제를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면제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하였고, △동 제도는 기존 법체계에 없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형벌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때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충실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대검찰청은 가담자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임.

○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실증적 수사 단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엄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보이스피싱과 범죄수익은닉 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의 도입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통해 내부 가담자의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신속·실효적 단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감면제 도입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만, 개정안들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은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가해자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감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정의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 다른 분야와

5) 2025. 8. 28. 보도자료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따른 필요성과 형평성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조인철의원안 제17조의2제2항은 자진신고 또는 제보·협조 사항에 대한 제3자 제공·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형법」상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존재하므로[6]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조인철의원안의 제3자 누설 금지 조항의 경우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 등의 범위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마지막으로, 조인철의원안 제17조의2제3항은 감면 적용 후 5년 이내 다시 감면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재감면을 금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반복적 악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도 이러한 재감면 금지 조항을 도입할지 여부 및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정조치 또는

6)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과징금(행정상 제재)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감면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감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7],

형벌 감면의 경우 그 재범에 대한 감면 금지를 법률이 아닌 **대검찰청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규율하고 있고[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역시 행정상 제재가 아닌 형벌에 대한 감면을 정하고 있는바 그 재범에 대한 감면 금지를 법률이 아닌 **대검찰청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9]에서 규율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형벌감면 특례 제한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과 가담 정도가 다양한 점, 본문상 이미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된 점 등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8)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1조(형벌감면의 제한)** ① 제10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받은 자가 그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벌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의 기산일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9)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23조(형벌감면의 제한)** ① 제2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받은 사람이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벌감면이 제한되는 기간의 기산일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을 고려하여 법률로 재량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